

효와수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교육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 사례, 예방법, 대응방법)



01

노인 권리 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02 노인 인권의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03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후 연락을 두절한다.



04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폭행, 신체를 강제로 억압,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정서적 학대



욕설,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

성적 학대



성폭력, 성희롱

방임 및 자기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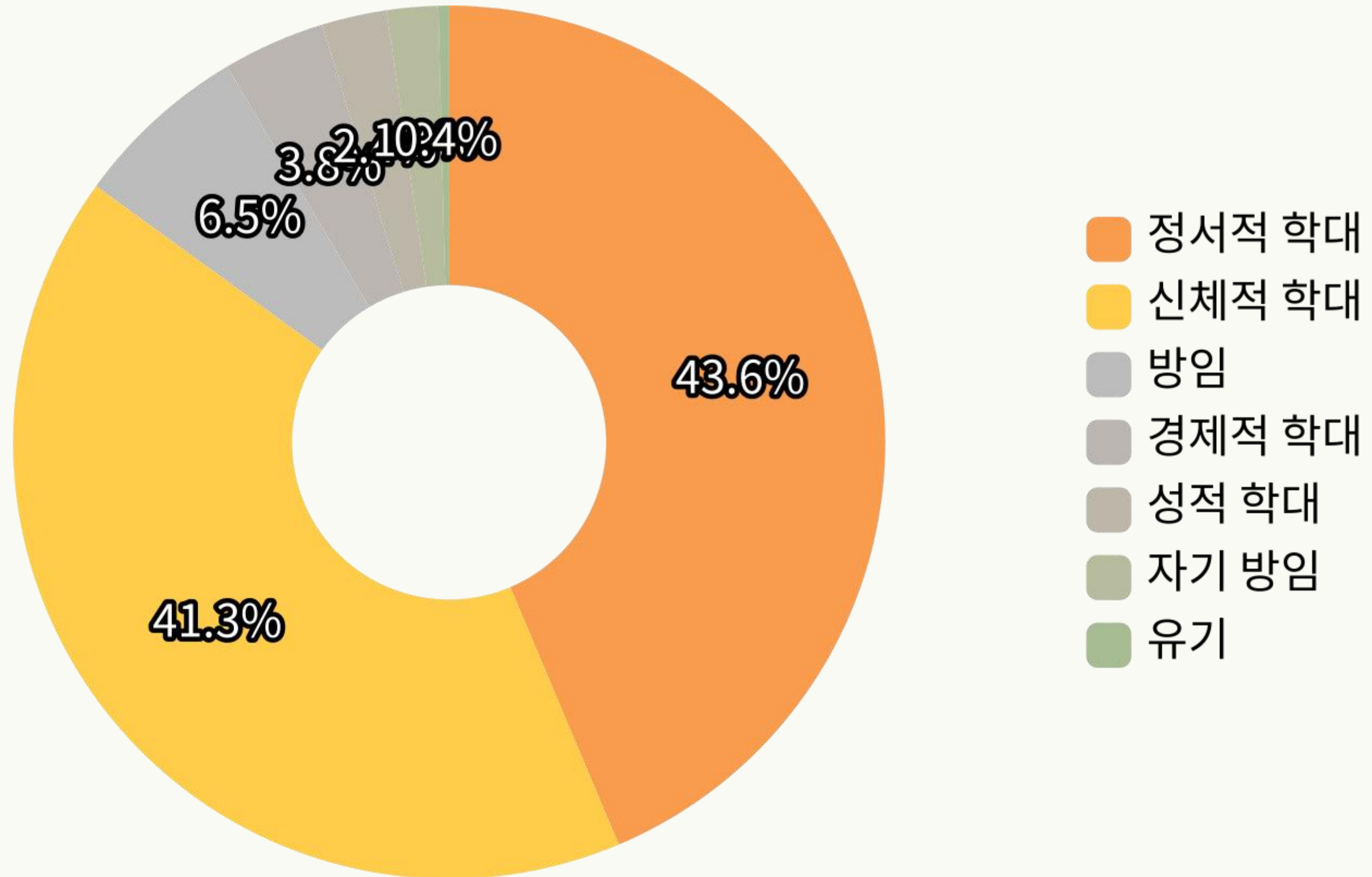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유 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05 노인학대 유형 비율



06 노인학대 사례

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사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 ✓ 노인에게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악취, 욕창, 염증)을 소홀히 한다.

06 노인학대 사례

[국민건강보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 동영상



학대사례 동영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실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사례 10개



07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제6조 【노인학대예방활동】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의 역할

- ①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전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한다.
- ③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시설 종사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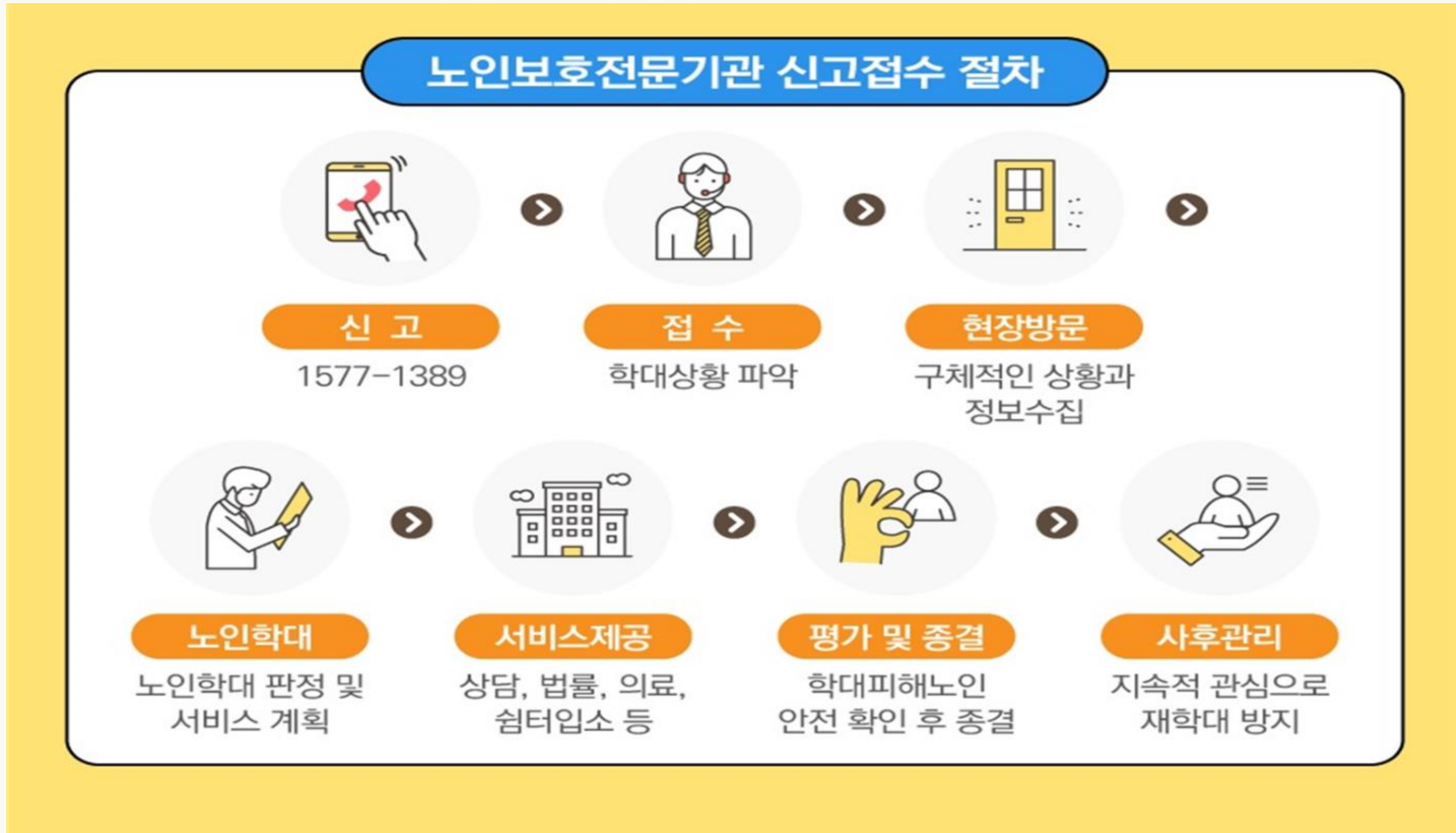
- ① 동료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학대행위 사실을 알리고 신고한다.
-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다.
- ③ 바람직한 노인 돌봄에 대한 방법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 ④ 전 직원은 본 지침의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08 노인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제7조 【노인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1.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 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09 노인학대 사례 처리절차



10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 신고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신고 및 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